

벤처기업의 힘!

-특허 완전정복



※ 본지 114호 「지적 재산권 제대로 알기」와 이어집니다

III. 특허제도의 개요

7. 발명자와 출원인의 차이

- (1)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한 자로서 특허증에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는 명예권을 갖으며 발명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지 않는 한, 발명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 (2)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추후에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특허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법인은 발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합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공동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제품 출시 전에 특허출원

- (1) 제품을 출시한 후, 특허출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특허출원 전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팸플릿을 통하여 제품을 광고한 경우, 발명자 또는 출원인은 자신의 공개행위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공개하거나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또한 제품을 출시한 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또는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발명일로부터 1년 이내(grace period)에 미국 또는 호주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제품을 출시한 후, 특허인은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시 그러한 사실(특허법에서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를 적용받기 위한 취지)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영업비밀과 특허출원

특허제도는 기술공개에 대가로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이 가진 기술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것인지 또는 특허로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법에 의한 보호보다 어렵습니다.

- (i) 영업비밀이 유출 전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어렵고 이미 유출된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ii) 영업비밀의 요건, 예컨대 비공지성, 경제성 및 비밀 유지성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컨대 코카콜라사의 콜라 제조 방법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라 제조 방법을 영업 비밀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기술이 타사의 기술에 비하여 월등하여



윤재석 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라이م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 범위는 반도체/ System LSI회로, 통신/인터넷/보안관련기술, BM, 게임, 반도체 장비, 바이오 및 화학 등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전문가 POOL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변리사 윤재석 (yoon@primepat.com) 02-565-0857



핫 / 이 / 슈

-디지털 뉴스 저작권

타사의 모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타인의 특허권 침해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사의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전략보다는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여 자사의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퍼서 올린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펴글이 디지털 뉴스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 핫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10.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1) 개인 및 중소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또는 적극적권리범 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를 50% 또는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허출원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시, 심사청구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2)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

(3)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인 기업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

한국온라인신문협회(KONA) 디지털 뉴스이용규칙 (2005.6.1. [Ver. 2.0])

인터넷 뉴스와 같은 디지털 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펴글은 승인 없는 복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펴글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 예컨대 단순 링크 및 직접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기업이 언론사 홈 페이지에 떠 있는 자사 또는 타사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 PDF 또는 이미지를 허가없이 퍼와서 자사의 홈 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도 디지털 뉴스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즉, 디지털 뉴스 저작물의 개인적 사용에는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되지 않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영업 목적(예컨대 자사 홍보의 목적)을 갖고 디지털 뉴스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경우 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은 디지털 뉴스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는 디지털 뉴스 저작물을 승인 없이 복제하는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또는 커뮤니티형 웹 사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kona.or.kr를 참조바랍니다.)